

개발구역 지정제안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개월	
제안자	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			법인등록번호		
	주소			전화번호		
개발구역	구역명					
	지정목적					
	위치					
	시행방식					
	시행기간	. . . ~ . . .			면적	m²
	수용계획	계획인구			세대수	
주요 유치업종				공장수		

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구역 조사서 2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.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.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 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7. 관계 시·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8.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(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)의 동의서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지적도 및 임야도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)	

